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84393		
등록번호	134811-0326191		
상 호	보로노이 주식회사		. . .
본 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54(송도동)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18층(송도동, 아이티센터)		2018.10.04 변경 2018.10.05 등기
공고방법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본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voronoi.io)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 등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18.10.04 변경 2018.10.05 등기
1주의 금액	금 10,000 원		. . .
	금 500 원		2019.01.11 변경 2019.01.14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 주		. . .
	1,000,000 주		2016.11.08 변경 2016.11.09 등기
	10,000,000 주		2016.11.21 변경 2016.11.23 등기
	100,000,000 주		2018.12.10 변경 2019.01.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10,000 주		. . .
보통주식	110,000 주	금 1,100,000,000 원	. . .
발행주식의 총수	300,000 주		2016.11.09 변경
보통주식	300,000 주	금 3,000,000,000 원	2016.11.0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24,000 주		2016.11.22 변경
보통주식	424,000 주	금 4,240,000,000 원	2016.11.2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46,200 주		2017.08.19 변경
보통주식	446,200 주	금 4,462,000,000 원	2017.08.2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55,306 주		2018.03.14 변경
보통주식	455,306 주	금 4,553,060,000 원	2018.03.14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5월27일 16시44분52초

등기번호	084393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457,007 주		2018.06.28 변경
보통주식	457,007 주	금 4,570,070,000 원	2018.06.2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57,736 주		2018.07.04 변경
보통주식	457,736 주	금 4,577,360,000 원	2018.07.0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81,083 주		2018.07.19 변경
보통주식	481,083 주	금 4,810,830,000 원	2018.07.1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84,540 주		2018.08.23 변경
보통주식	484,540 주	금 4,845,400,000 원	2018.08.2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85,752 주		2018.11.06 변경
보통주식	485,752 주	금 4,857,520,000 원	2018.11.0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9,715,040 주		2019.01.11 변경
보통주식	9,715,040 주	금 4,857,520,000 원	2019.01.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9,772,487 주		2019.03.19 변경
보통주식	9,715,040 주		2019.04.02 등기
전환우선주식	57,447 주	금 4,886,243,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9,829,122 주		2019.03.30 변경
보통주식	9,715,040 주		2019.04.02 등기
전환우선주식	114,082 주	금 4,914,561,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9,858,290 주		2019.04.09 변경
보통주식	9,715,040 주		2019.04.17 등기
전환우선주식	143,250 주	금 4,929,145,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9,867,137 주		2019.06.01 변경
보통주식	9,715,040 주		2019.06.17 등기
전환우선주식	152,097 주	금 4,933,568,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9,891,409 주		2019.06.20 변경
보통주식	9,715,040 주		2019.06.26 등기
전환우선주식	176,369 주	금 4,945,704,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9,910,869 주		2019.07.17 변경
보통주식	9,734,500 주		2019.09.10 등기
전환우선주식	176,369 주	금 4,955,434,5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9,929,478 주		2019.11.12 변경
보통주식	9,734,500 주		2019.11.22 등기
전환우선주식	194,978 주	금 4,964,739,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9,944,448 주		2019.12.11 변경
보통주식	9,734,500 주		2019.12.24 등기
전환우선주식	209,948 주	금 4,972,224,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9,971,007 주		2019.12.31 변경
보통주식	9,734,500 주		2020.01.10 등기
전환우선주식	236,507 주	금 4,985,503,500 원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5월27일 16시44분52초

등기번호	084393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9,977,210 주 보통주식 9,734,500 주 전환우선주식 242,710 주	금 4,988,605,000 원	2020.02.08 변경
		2020.02.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0,092,185 주 보통주식 9,734,500 주 전환우선주식 357,685 주	금 5,046,092,500 원	2020.02.22 변경
		2020.03.0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0,109,929 주 보통주식 9,734,500 주 전환우선주식 375,429 주	금 5,054,964,500 원	2020.05.08 변경 2020.05.22 등기

목	적			
1.캠핑카 디자인, 설계, 제조, 영업, 판매	<2018.07.04 삭제	2018.07.04	등기>	
1.캠핑트레일러 디자인, 설계, 제조, 영업, 판매	<2018.07.04 삭제	2018.07.04	등기>	
1.캠핑용품 디자인, 설계, 제조, 영업, 판매	<2018.07.04 삭제	2018.07.04	등기>	
1.요트 디자인, 설계, 제조, 영업, 판매	<2018.07.04 삭제	2018.07.04	등기>	
1.밴(VAN) 리무진 컨버전 디자인, 설계, 제조, 영업, 판매	<2018.07.04 삭제	2018.07.04	등기>	
1.목공기계 디자인, 설계, 제조, 영업, 판매	<2018.07.04 삭제	2018.07.04	등기>	
1.가구 디자인, 설계, 제조, 영업, 판매	<2018.07.04 삭제	2018.07.04	등기>	
1.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1.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018.07.04 변경	2018.07.04	등기>	
1.의약품 제조업 및 동 판매업, 도매업, 소분업				
1.원료의약품 판매업				
1.의약부외품 제조업 및 판매업				
1.식품제조업 및 판매업				
1.동물의약품 판매업				
1.위 각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1.부동산임대업				
1.의료용구 판매업				
1.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017.03.02 추가	2017.03.03	등기>	
1.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2018.07.04 변경	2018.07.04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김현석 781116-***** 인천광역시 중구 재물량로232번길 20-12, 202호(관동1가, 인성아트빌)	2015년 02월 24일 취임 2015년 02월 24일 등기
사내이사 김현석 781116-*****	2016년 10월 13일 주소삭제 2016년 10월 17일 등기
감사 안응남 510122-*****	2018년 02월 24일 퇴임 2018년 07월 04일 등기
2015년 02월 24일 취임	2015년 02월 24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5월27일 16시44분52초

등기번호	084393	
2018년 03월 13일 사임	2018년 03월 16일 등기	
사내이사 김수호 780604-*****		
2016년 10월 13일 취임	2016년 10월 17일 등기	
2019년 01월 18일 사임	2019년 01월 31일 등기	
사내이사 김현태 761103-*****		
2016년 10월 13일 취임	2016년 10월 17일 등기	
2019년 10월 13일 중임	2019년 10월 23일 등기	
대표이사 김현태 7611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88길 30, 105동 1801호(이촌동, 삼성리 버스위트)		
2016년 10월 13일 취임	2016년 10월 17일 등기	
대표이사 김현태 7611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123동 2503호(반포동, 래미안퍼 스타저)		
2017년 12월 26일 주소변경	2018년 07월 04일 등기	
대표이사 김현태 76110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30, 305동 3403호(송도동, 송도해모로월드뷰)		
2019년 03월 29일 주소변경	2019년 04월 02일 등기	
2019년 10월 13일 중임	2019년 10월 23일 등기	
감사 권기호 800114-*****		
2018년 03월 13일 취임	2018년 03월 16일 등기	
2018년 10월 25일 사임	2018년 10월 25일 등기	
사내이사 김현석 781116-*****		
2018년 07월 04일 취임	2018년 07월 04일 등기	
2019년 01월 18일 사임	2019년 01월 31일 등기	
감사 김선호 800312-*****		
2018년 10월 25일 취임	2018년 10월 25일 등기	
사내이사 성익환 760202-*****		
2019년 01월 18일 취임	2019년 01월 31일 등기	
2019년 09월 26일 사임	2019년 09월 27일 등기	
사내이사 권기호 800114-*****		
2019년 01월 18일 취임	2019년 01월 31일 등기	
사내이사 김대권 760814-*****		
2019년 05월 30일 취임	2019년 05월 30일 등기	
대표이사 김대권 7608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72, 102동 801호(범어동, 서 한두레맨션)		
2019년 05월 30일 취임	2019년 05월 30일 등기	
사외이사 이상욱 770202-*****		
2019년 08월 05일 취임	2019년 08월 19일 등기	
사외이사 윤석균 570708-*****		
2019년 10월 11일 취임	2019년 10월 23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식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5월27일 16시44분52초

- 4/42 -

~~전환우선주식 57,447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은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123,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
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
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 등
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
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
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
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
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액} = \text{조정전 전환가액} \times \left[\frac{A + (B \times C/D)}{A + B} \right]$$

- A: 기발행주식수
- B: 신발행주식수
- C: 1주당 발행가액
- D: 조정전 전환가액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
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본 (c)호에 따
른 조정의 한도는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단, (a)호에 따른 조정을 적용한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
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
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
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중
분한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가 완료된 날(발행회사의 주식 상장이 완료된 날을 말
한다)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19년 03월 19일 설정 2019년 04월 02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114,082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
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
통주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 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은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123,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시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지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 + (B × C/D)) / (A + B)]~~

- ~~A: 기발행주식수~~
- ~~B: 신발행주식수~~
- ~~C: 1주당 발행가액~~
- ~~D: 조정전 전환가액~~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본 (c)호에 따른 조정의 한도는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단, (a)호에 따른 조정을 적용한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가 완료된 날(발행회사의 주식 상장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19년 03월 30일 변경 2019년 04월 02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143,250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의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의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는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비~~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123,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지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액} = \text{조정전 전환가액} \times \left[\frac{A + (B \times C/D)}{A + B} \right]$$

A: 기발행주식수

- B: 신발행주식수
- C: 1주당 발행가액
- D: 조정전 전환가액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본 (c)호에 따른 조정의 한도는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단, (a)호에 따른 조정을 적용한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가 완료된 날(발행회사의 주식 상장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19년 04월 09일 변경 2019년 04월 17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152,097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미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의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

~~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은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의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123,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액} = \text{조정전 전환가액} \times \left\{ \frac{A + (B \times C/D)}{A + B} \right\}$$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조정전 전환가액~~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본 (c)호에 따른 조정의 한도는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단, (a)호에 따른 조정을 적용한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가 완료된 날(발행회사의 주식 상장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19년 06월 01일 변경 2019년 06월 17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176,369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의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은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의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123,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액} = \text{조정전 전환가액} \times \left[\frac{A + (B \times C/D)}{A + B} \right]$$~~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조정전 전환가액~~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본 (c)호에 따른 조정의 한도는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단, (a)호에 따른 조정을 적용한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등기번호

084393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가 완료된 날(발행회사의 주식 상장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19년 06월 20일 변경 2019년 06월 26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176,369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는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123,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d) 기업공개 이후의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기업공개 후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최초 거래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조정일이 증권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을 조정일로 함; 예컨대 3월 2일이 최초 거래일인 경우 4월 2일, 5월 2일)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되, 최초 전환가액과 공모가격 중 낮은 금액의 70%를 조정후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등기번호

084393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20년 03월 30일 변경

2020년 04월 14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18,609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의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은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의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123,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

~~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지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 + (B × C/D)) / (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조정전 전환가액~~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가 완료된 날(발행회사의 주식 상장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19년 11월 12일 설정 2019년 11월 22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18,609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는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123,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d) 기업공개 이후의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기업공개 후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최초 거래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조정일이 증권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을 조정일로 함; 예컨대 3월 2일이 최초 거래일인 경우 4월 2일, 5월 2일)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되, 최초 전환가액과 공모가격 중 낮은 금액의 70%를 조정후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20년 03월 30일 변경 2020년 04월 14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14,970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의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의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는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의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123,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

~~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가 완료된 날(발행회사의 주식 상장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19년 12월 11일 설정 2019년 12월 24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14,970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주의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미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의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은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금액의 합계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격 : 최초의 전환가격은 주당 인수금액인 123,600원으로 한다. 전환가격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격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격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5) 전환가격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교,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가 완료된 날(발행회사의 주식 상장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등기번호

084393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19년 12월 11일 경정 2020년 04월 13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14,970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는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등기번호

084393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123,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d) 기업공개 이후의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기업공개 후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최초 거래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조정일이 증권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을 조정일로 함; 예컨대 3월 2일이 최초 거래일인 경우 4월 2일, 5월 2일)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술평균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되, 최초 전환가액과 공모가격 중 낮은 금액의 70%를 조정후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20년 03월 30일 변경 2020년 04월 14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26,559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와의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은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80,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
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
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 등
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
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
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
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
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
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d) 기업공개 이후의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3개월 간, 기업공개 후 최초 거
래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최초 거래일을 포함하여 계
산하되, 조정일이 증권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을 조정일로 함;
예컨대 3월 2일이 최초 거래일인 경우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
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되, 최초 전환가액과 공모가격 중 낮은 금
액의 70%를 조정후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e) 위 (a) 내지 (d)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
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
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
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
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
분한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가 완료된 날(발행회사의 주식 상장이 완료된 날을 말
한다)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19년 12월 31일 설정 2020년 01월 10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26,559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
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는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80,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 등~~

~~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d) 기업공개 이후의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3개월 간, 기업공개 후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최초 거래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조정일이 증권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을 조정일로 함; 예컨대 3월 2일이 최초 거래일인 경우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를 산술평균한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하되, 최초 전환가격과 공모가격 중 낮은 금액의 70%를 조정후 전환가격의 하한으로 한다.~~

~~(e) 위 (a) 내지 (d)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의 하한으로 한다.~~

~~(5) 전환가격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의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가 완료된 날(발행회사의 주식 상장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19년 12월 31일 경정 2020년 04월 13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26,559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

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는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80,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

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d) 기업공개 이후의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기업공개 후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최초 거래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조정일이 증권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을 조정일로 함; 예컨대 3월 2일이 최초 거래일인 경우 4월 2일, 5월 2일)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술평균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되, 최초 전환가액과 공모가격 중 낮은 금액의 70%를 조정후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e) 위 (a) 내지 (d)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20년 03월 30일 변경 2020년 04월 14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6,203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의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는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의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80,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

~~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d) 기업공개 이후의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3개월 간, 기업공개 후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최초 거래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조정일이 증권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을 조정일로 함; 예컨대 3월 2일이 최초 거래일인 경우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되, 최초 전환가액과 공모가격 중 낮은 금액의 70%를 조정후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e) 2020년 9월 30일까지 라이선스 가액 합계 USD 30,000,000 이상의 조건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한 물질 또는 지적재산권(등록된 지적재산권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하여(license-out)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본건 우선주주의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따라 전환가액을 주당 인수가액의 7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f) 위 (a) 내지 (e)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제1항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이 최초 전환가액의 70%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지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으로써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20년 02월 08일 설정 2020년 02월 14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6,203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은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의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80,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d) 기업공개 이후의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3개월 간, 기업공개 후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최초 거래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조정일이 증권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을 조정일로 함; 예컨대 3월 2일이 최초 거래일인 경우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되, 최초 전환가액과 공모가격 중 낮은 금액의 70%를 조정후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e) 2020년 9월 30일까지 라이선스 가액 합계 USD 30,000,000 이상의 조건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한 물질 또는 지적재산권(등록된 지적재산권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하여(license out)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본건 우선주주의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따라 전환가액을 주당 인수가액의 7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f) 위 (a) 내지 (e)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제1항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이 최초 전환가액의 70%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지게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20년 02월 08일 경정 2020년 04월 13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6,203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는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80,6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등기번호

084393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d) 기업공개 이후의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기업공개 후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최초 거래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조정일이 증권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을 조정일로 함; 예컨대 3월 2일이 최초 거래일인 경우 4월 2일, 5월 2일)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되, 최초 전환가액과 공모가격 중 낮은 금액의 70%를 조정후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e) 2020년 9월 30일까지 라이선스 가액 합계 USD 30,000,000 이상의 조건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한 물질 또는 지적재산권(등록된 지적재산권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하여(license-out)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본건 우선주주의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따라 전환가액을 주당 인수가액의 7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f) 위 (a) 내지 (e)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20년 03월 30일 변경 2020년 04월 14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114,975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

회사의 기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은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격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인 45,100원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

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d) 기업공개 이후의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기업공개 후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최초 거래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조정일이 증권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을 조정일로 함; 예컨대 3월 2일이 최초 거래일인 경우 4월 2일, 5월 2일)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되, 최초 전환가액과 공모가격 중 낮은 금액의 70%를 조정후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e) 위 (a) 내지 (e)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20년 02월 22일 설정 2020년 03월 09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전환우선주식 17,744주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받을 권리, 출석할 권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 모든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보통주주와 동일한 종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조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이익배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회사의 미발행 주식에 대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전환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3조 청산 시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한국법이 허용하는 한, 아래와 같이 청산시에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2.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시 발행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후 잔여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선권을 가진다.

(1) 발행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분할이나 병합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비례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발행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우선주에 분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1주당 분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배한다(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보통주 주주에게는 부족한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안분 지급한다). 위와 같은 분배 후에도 남는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그 날부터 오(5)년이 경과된 날의 전일에 종료(이하 “전환기간” 또는 “투자자의 전환기간”) 된다.

(1) 전환권.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주의 선택으로 아래에서 정의되는 전환가액으로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주의 수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당시에 행사하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가 제시한 모든 본건 우선주의 주당 인수가액의 합계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결정된다. 만약,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보통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전환의 절차.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우선주 소유자는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 행사 통지서(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전환청구에 따른 보통주를 발행하고 관련 증명서와 같이 전환권 행사자에게 교부한다.

(3) 전환가액. 최초의 전환가액은 주당 인수가액으로 한다. 전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액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전환가액의 조정

(a) 주식분할, 주식병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총칭하여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액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b) 본건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조정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c) 기업공개에 따른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공모가격으로 조정한다.

등기번호

084393

(d) 기업공개 이후의 조정.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기업공개 후 최초 거래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최초 거래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조정일이 증권시장이 개장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을 조정일로 함; 예컨대 3월 2일이 최초 거래일인 경우 4월 2일, 5월 2일)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를 산술평균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되, 최초 전환가액과 공모가격 중 낮은 금액의 70%를 조정후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e) 위 (a) 내지 (e)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의 하한으로 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6) 미발행 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가 현존하는 동안 유효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발행 수권주식수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에 충분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충분한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발행 주식이 유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전환권.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이후 본건 우선주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동전환.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건 우선주는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20 년 05 월 08 일 설정 2020 년 05 월 22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018 년 10 월 18 일 설치 2018 년 10 월 19 일 등기

주 식 매 수 선택 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본 회사는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의 최대 범위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2017 년 12 월 27 일 설정 2017 년 12 월 27 일 등기 >~~

~~본 회사는 임.직원 및 임직원 외의 자에게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의 최대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본 회사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부여 할 수 있다.~~

~~< 2018 년 07 월 04 일 변경 2018 년 07 월 04 일 등기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84393

본 회사는 임.직원 및 임직원 외의 자에게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의 최대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본 회사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9년 05월 30일 변경 2019년 05월 30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2)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17년 12월 27일 설정 2017년 12월 27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 2017년 12월 27일 설정 2017년 12월 27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외의 자로 한다.~~

< 2018년 07월 04일 변경 2018년 07월 04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외의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9년 05월 30일 변경 2019년 05월 30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 2017년 12월 27일 설정 2017년 12월 27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정해진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다.

< 2018년 07월 04일 변경 2018년 07월 04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사임 또는 퇴직한 경우
- 2)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등기번호	084393
------	--------

<p>한 경우</p> <p>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7년 12월 27일 설정 2017년 12월 27일 등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사임 또는 퇴직한 경우</p> <p>2)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p> <p>3) 회사의 파산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p> <p>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9년 10월 11일 변경 2019년 10월 23일 등기 ></p>

회사성립연월일	2015년 02월 24일
---------	---------------

<p>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p> <p>2016년 10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12-1으로부터 본점이전 2016년 10월 19일 등기</p>
--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